


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지침

가.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(2019.11월, 환경부)

| | |
|--|--|
| <p>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</p> <p>2019. 11. 22.</p> <p> 환 경 부 폐자원관리과</p> | <p>라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방법 (위수탁 계약)</p> <p>□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수집·운반)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 중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(폐섬유류, 51-27-99)”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·운반업체에 위탁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(종량제 봉투)로 배출 불가 ○ (소각처분)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(51-27-99)를 영업대상으로 허가 받은 중간처분(소각) 업체에 위탁 |
|--|--|

나. 2019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(2019.12월, 환경부)

| | |
|---|---|
| <p>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</p> <p>2019. 12</p> <p> 환 경 부</p> | <p>나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(51-27-99)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시설에서 처분(재환용 금지) |
|---|---|